

표지

머리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종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RS 신고(모두채움 신고 안내자인 경우)와 모바일 신고(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종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세액계산 내역, 소득발생처 등 핵심사항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였고, QR코드를 추가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체계, 흠택스 전자신고 방법 및 신고서 작성 요령, 주요 문답사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종교인 여러분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4.

개인납세국장 21 4. 26.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 포함

○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치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별납부 신청의 경우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기간 동안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교인소득 확정신고 대상

-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①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 소득유형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 비교 가능
- 흠텍스(PC)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종교인소득 관련법령 |

구분	내용	법령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법§21①제26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허용	소법§21④
	종교단체의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그 소속 단체를 포함)	소령§41⑯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소법§12제5호 아목
	비과세 대상의 세부기준 -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종교활동비 등), 자녀보육 수당, 사택제공이익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 2천만이하 80%,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 감소(~20%)	소령§87제3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 예외 -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73①,②
	종교단체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령§186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소령§202④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 소득 지급 시(미지급시 2월말)	소법§145의3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세액공제하여 소득세 산출	소령§202의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법§155의6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소법§164
기타	종교단체의 구분기장에 대한 규정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비과세 금품도 포함)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소령§41⑯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 종교단체가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하여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음	소법§170 소령§2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21호),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23호 서식(6)),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25호의3) 등	소칙(별지서식)

|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

구분	종류	서식	제출시기	비 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신청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월 31일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선택 가능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다음해 5월 말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음해 5월 말일	

제1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1

I. 과세 개요	2
II.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7
III.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12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5

I.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16
II.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18
III. 신고서 작성사례	27
IV. 종교인소득 흠텍스(스마트폰) 신고요령	35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99

I. 계산구조	100
II.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방법	102
III. 신고서 작성사례	103

| CONTENTS |

제4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05

I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06
II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109
III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12
IV . 퇴직소득 원천징수	115

제5장 근로·자녀장려금 119

제6장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 사례 127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제 1 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 I 과세 개요
- II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III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I | 과세 개요

1. 종교관련종사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구분	업무
•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종사자 〉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직업 예시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교무(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 (24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2.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3. 종교인소득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을 포함

나. 비과세 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자녀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교육비세액 공제 가능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

○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사택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종교 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4.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 구분 기록·관리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종교단체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함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
-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
 - *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원천징수)이 아님

3)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 관리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종교인소득)
-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등)
-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유지비용 등)

종교단체의 지출(소요 비용)	소득 귀속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으로 귀속
-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교활동비)	→ 법령에 따라 지출한 경우 비과세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 종사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귀속
③ 종교시설 유지 또는 증축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보수비 등)	→ 과세 대상 아님

II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신고대상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교인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소득

- 1)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
- 2)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및 보육관련비용, 사택제공이익으로 법령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3. 신고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 ~ 12.31.	다음연도 5.1. ~ 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 ~ 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다음연도 1.1. ~ 5.31.중 사망(출국)시	1.1. ~ 12.31. 다음연도 1.1.~사망(출국)일	

4. 신고서(구분 작성)

- 1)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5))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려는 경우와 종교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20.1.1. 이후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서식으로 신고

5. 납세지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납세지
종교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6. 소득 유형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7. 신고서 제출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흠택스(PC)·손택스(모바일,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ARS(모두채움 신고 안내자인 경우)로 신고할 수 있음

8.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5.1.~5.31. 기간 동안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2)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송부함

9.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0.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 1) 종교인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
 -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
 -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1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경정청구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III |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1.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

-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2)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2.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함

3. 신고대상

- 1)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신고기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2021.1.1.~12.31.	2022.5.1.~5.31.

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신고서

- 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40호의6 서식)

제 2 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I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 II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 III 신고서 작성사례
- IV 종교인소득 흠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I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1.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비교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 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종교인이 받은금액</th> <th>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의 50%</td> </tr> <tr> <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 <td>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의 30%</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의 20%</td> </tr> </tbody> </table> <p>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 인정</p>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의 20%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p>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p>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의 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 - ②)			
④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⑤ 과세표준(③ - ④)	
	⑥ (✗) 세율(6~42%)		
	⑦ 산출세액(⑤×⑥)		
⑧ 세액 공제	특별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 ○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특별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미신청자)	○ ○ (7만원)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⑨ 결정세액(⑦ - ⑧)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 비교기능 제공

- 흠텍스(PC)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II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1.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구분	계산방법																
① 종교인소득 수령액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연간 지급받는 소득																
② (-)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③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액	(=연간 종교인소득 수령액 - 비과세소득)																
④ (-) 필요 경비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⑤ 소득금액 (③-④)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⑥ (-) 인적 공제	(=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 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제한없음												
⑦ (-) 연금보험료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											

구분	계산방법			
	구 分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⑧ (-) 그 밖의 소득공제	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	'18년도 이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⑨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70·100% 적용분 제외)			
⑩ 과세표준	$=(\text{소득금액} - \text{인적공제} - \text{연금보험료공제} - \text{그 밖의 소득공제}) + \text{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⑪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구분	계산방법	
	〈참고〉 간편법	
(11) 기본세율	과세표준	산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12) 산출세액 (10) ×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40만원
(13) (-) 세액공제	과세표준 × 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중 7세 이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14) 결정세액 (12)-(13)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300만원) - 50세 이상 : 연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 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PR),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합계가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0년), 지정기부금(10년)	
(14) 결정세액 (12)-(13)	• 표준세액공제 : 연 7만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구분	내용																
① 연간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소득																
② (-)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이 적용																
③ 총급여액 (①-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④ (-)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⑤ 근로소득금액 (③-④)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⑥ (-) 인적공제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 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⑦ (-) 연금보험료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 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⑧ (-) 국민연금공제											
						⑨ (-) 공무원연금공제											
						⑩ (-) 국민연금공제											

구분	내용														
		<p>□ 보험료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p>□ 주택자금공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 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중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⑧ (-) 특별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종류</th><th colspan="2">공제금액(한도액)</th></tr> </thead> <tbody> <tr> <td>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td>이자상환액 전액</td><td>※ 전체 (⑦+⑧+⑨) 한도액 ⑦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td></tr> <tr> <td>⑧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td><td>원리금 상환액 × 40%</td><td>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⑧+⑨ ② : 연300만원</td></tr> <tr> <td>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td><td>저축 납입액 × 40%</td><td></td></tr> </tbody> </table>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⑦+⑧+⑨) 한도액 ⑦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⑧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⑧+⑨ ② : 연300만원	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⑦+⑧+⑨) 한도액 ⑦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⑧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⑧+⑨ ② : 연300만원													
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⑨ (-) 그 밖의 소득공제		<p>□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로(사업)소득 금액</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 <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 <tr> <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body> </table> <p>*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p>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분	내용																		
	<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p> <p>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소득공제액</th><th>공제한도액</th></tr> </thead> <tbody> <tr> <td>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td><td>출자금액의 10% (100%, 70%, 30%)*</td><td>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td></tr> </tbody> </table>	구 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p>* '18년도 이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p>											
구 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p>□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⑨ (-) 그 밖의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td>15%</td></tr> <tr> <td>현금영수증 등</td><td>30%</td></tr> <tr> <td>전통시장 등</td><td>4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소비증가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tr> <tr> <td>7천만원~1억2천만원</td><td>250만원</td></tr> <tr> <td>1억2천만원 초과</td><td>20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 등	40%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 등	40%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p>□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p>□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배제 																		
⑩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p>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p> <p>*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p>																		
⑪ 과세표준	<p>(=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p>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내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⑫ (x)
기본세율

참고 간편법

과세표준	산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40만원

⑬ 산출세액 (⑪ × ⑫)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구분	내용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 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100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총급여액	한도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50만원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중 7세이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300만원) - 50세 이상 : 연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 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는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된 자 : 공제대상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포함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내용
⑭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세액공제(15%)<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중·고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포함),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자정기부금 공제대상 합계가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0년), 자정기부금(10년)•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연 13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p>〈조특법상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총급여 5.5천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경우 12%]
⑮ 결정세액 (⑬-⑭)	(= 산출세액 - 세액공제)

III | 신고서 작성사례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기본사항

성명 : 박대한
 주소 : 세종시 새롬로 ***
 소속 : A교회

자료2 종교인소득금액 내역

지급처 : A교회
 지급내역 : A교회에서 종교인 박대한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한 2021년 귀속 과세대상 수당
 총 54,000,000원을 지급,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을 미이행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세 106,840원, 지방소득세 10,680원

자료3 가족사항

구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고
본인	73.1.3		
배우자	78.10.8	소득없음	
자녀1	06.9.1	소득없음	
모친	41.10.23	소득없음	

자료4 기타사항

- * 국민연금보험료 : 1,000,000원
- * 연금저축 납입액(2015년 가입) : 1,000,000원

1.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종교인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인은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을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사항 ⇒ ④ 종교인소득명세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
* '20.1.1. 이후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별도신고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 (신고서 제1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자우편주소(e-mail), ⑤주소지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⑦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④ 종교인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2쪽)

- ⑥6 일련번호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⑥7 종교단체명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명을 적습니다.
- ⑥8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⑥9 총수입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54,000,000원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1쪽~제2쪽)

- ③1 총수입금액 : ④종교인소득 명세의 ⑨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③2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30,200,000원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상기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 ③3 종합소득금액 : ③1총수입금액란에서 ③2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③4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대상자 명세, ③5~④1의 인적공제, ④2~④5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에서 ④6의 금액을 차감한 8,000,000원을 적습니다.

③5~③7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③5 본인 : 1,500,000원

③6 배우자 : 1,500,000원

③7 부양가족 : 3,000,000원(2명)

③8~④1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③ 경로우대자 : 1,000,000원

④ 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⑤ 과세표준 : 15,800,000원(③ - ④)

⑥ 세율 : 15%

⑦ 산출세액 : 1,290,000원

* $15,800,000 \times 15\% = 1,080,000$ 원

⑧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서(⑪~⑯)의 합계금액 370,000원을 적습니다.

⑨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⑩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⑪ 연금계좌 세액공제 : 15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1,000,000원

연금저축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times 15\%$

⑫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합니다.

⑬ 결정세액 : 920,000원(⑦ - ⑧)

⑭ 총결정세액 : 920,000원(⑬ + ⑯)

⑮ 원천징수세액 : 106,840원

* ④ 종교인소득명세의 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⑯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813,160원 납부(⑬ - ⑮)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① 기본사항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자우편주소(e-mail), ⑤납세자,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⑪ 과세표준 : 15,800,000원(⑦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옮겨 적습니다.)
- ⑫ 세율 : 1.5%
- ⑬ 산출세액 : 129,000원
 * $15,800,000 \times 1.5\% = 108,000$ 원
- ⑭ 세액공제 : 37,000원(⑨ × 10%)
- ⑯ 기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10,684원(⑪ × 10%)
- ⑯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81,316원 납부(⑬-⑭+⑯-⑯)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1. 3. 16.>

(4쪽 중 제1쪽)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박대한		② 주민등록번호 730103-1*****			
	③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		④ 전자우편주소 123@Korea.com			
	⑤ 주소지 전화번호 044-***-***		⑥ 휴대전화번호 010-***-***			
	⑦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⑩ 정기신고 <input type="radio"/> ⑪ 수정신고 <input type="radio"/> ⑫ 기한 후 신고		⑧ 환급금 계좌신고 <input type="radio"/>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input type="radio"/> ⑩ 계좌번호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총수입금액: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⑬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4,000,000 ⑫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30,200,000 ⑬ 종합소득금액: ⑪ - ⑫ 23,800,000 ⑭ 소득공제: ⑯~⑯의 공제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000,000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코 드	성 명	내외국인 국	주 민 등 록 번 호		
	0	박대한	1	730103-1*****	기본 공제	⑯ 본인 1 1,500,000
	1	이현명	1	411023-2*****		⑰ 배우자 1 1,500,000
	3	김하나	1	780108-2*****		⑱ 부양가족 2 3,000,000
	4	박성실	1	060901-4*****		⑲ 경로우대자 1 1,000,000
					⑳ 장애인	
					㉑ 부녀자	
					㉒ 한부모가족	
	⑮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⑯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1,000,000					
	⑰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⑱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⑲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⑳ 과세표준: ⑯~⑯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5,800,000					
	㉑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㉒ 산출세액: ㉑ × ㉑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1,290,000					
	㉓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㉔~㉔)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370,000					
세액공제명세	㉔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 명	150,000
	㉕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㉖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1,000,000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쪽 중 제2쪽)

구 分		금 액
세 액 공 제 명 세	⑬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⑭ 표준세액공제: 7만원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⑯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⑰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⑲ 결정세액: ⑯~⑰("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70,000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920,000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⑲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⑩~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⑳ 무 신 고 ⑳ 일 반 무 신 고 ⑳ 과 소 신 고 ⑳ 일 반 과 소 신 고 ⑳ 납 부 지 연 ⑳ 미 납 일 수 ⑳ 미 납 부 (환 급) 세 액	40/100 20/100 40/100 10/100 25/100,000 920,000 106,840 813,160
기납부 세 액	⑳ 원천징수세액: ④ 종교인소득 명세의 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⑳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⑯~⑲	

④ 종교인소득 명세

⑯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⑰ 총수입금액	⑰ 원천징수세액
	⑰ 종교단체명	⑰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A교회	320-**-*****	54,000,000	106,840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박 대 한 (서명 또는 인)

세종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1. 4. 29..>

**(2021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박 대 한		② 주민등록번호	730103-1*****
	③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		④ 전자우편주소	123@Korea.com
⑤ 납세지	세종특별자치시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척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044-***-***	⑦ 휴대전화번호	010-***-***		
⑧ 신고구분	⑯ 정기신고, ⑰ 수정신고, ⑱ 기한후신고				
⑨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명	⑩ 계좌번호			

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과세표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⑭ 과세표준란의 금액		15,800,000

⑫ 세율: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과세표준	2017년		2018년~2020년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 × 세율(⑫) - 누진공제액(⑯하단 세율표 참고)]

129,000

⑭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⑮ × 10%

37,000

⑮ 결정세액: ⑬ - ⑭

92,000

⑯ 가산세액:	무(과)신고
	납부불성실
	합 계

무(과)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 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⑰ 총결정세액: ⑮ + ⑯(합계란 금액)

92,000

⑲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⑮ × 10%

10,684

⑳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⑯ - ⑲

81,316

신고인이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박 대 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서(해당자로 학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학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동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령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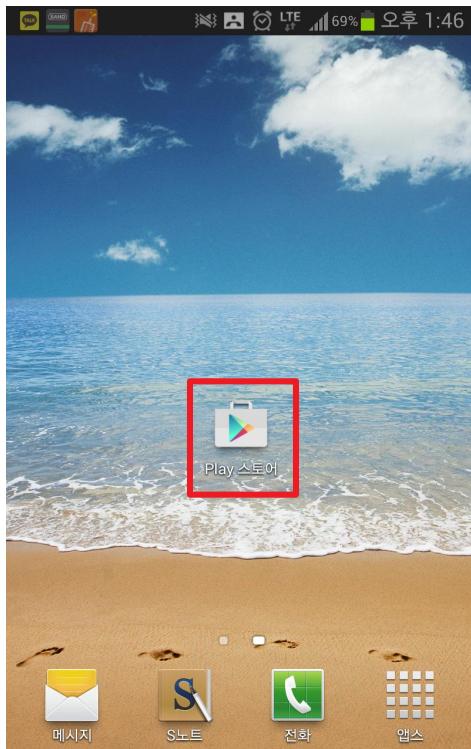
P A R T

IV | 종교인소득 홈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스마트폰)

1 로그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스마트폰(손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National Tax Service, Korea

4.2 ★
리뷰 2만개

1000만 이상
다운로드

만 3세 이상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Service, Korea

4.5 ★
리뷰 52개

1만 이상
다운로드

만 3세 이상 Ⓛ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을 검색합니다.
-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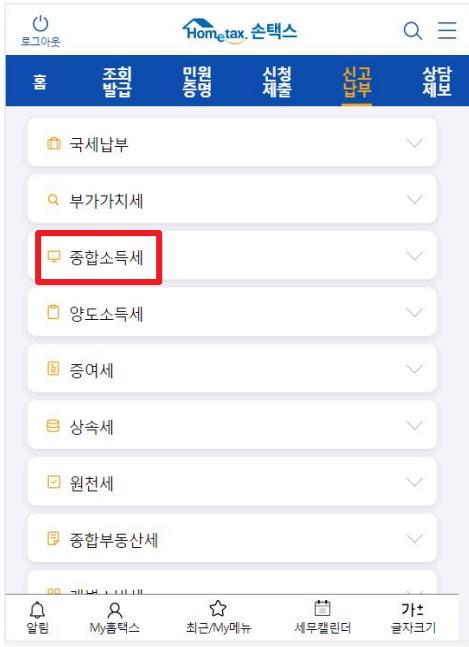
-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식은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의 방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Tax homepag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list of tax categories. The '종합소득세' (Comprehensive Income Tax)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o its right, a detailed list of sub-options for comprehensive income tax is displayed.

국세납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에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을 선택합니다.

2 기본사항 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Basic Information' (기본사항) section of the app. It includes fields for:

- Residence Number (주민등록번호): 800101-....., with a red box around the 'Check' button.
- Name (성명): 배****
- Address (주소):
 - Road Address (도로명 주소): 경기도 부천시 ****
 - Postcode (지번 주소): 경기도 부천시 ****
- 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
 - Mobile Phone (휴대전화): 선택
 - Home Phone (집전화): 선택
- Residence Status (거주구분): 거주자
- Nationality (내·외국인): 내국인
- Country of Residence (거주지국): KR
- Employment Status (모두채움 적용여부): 여 (부 selected)

A note at the bottom states: "종교단체에서 제출된 연말정산자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안내".

■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주소지 전화, 휴대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Q, R 유형)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여”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Q, R 유형)를 수정하거나 신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부’를 선택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부’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단위 : 원)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인적공제명세
- 세액공제명세
- 가산세액 계산명세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종교단체명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선택삭제 선택수정 입력

76)총수입금액	0
77)필요경비	0
78)소득금액	0

-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 할 경우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칸에 체크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닫기】 버튼을 클릭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증교인소득명세

X

⑤ 증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증교단체명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1 <input type="checkbox"/>	109-86- 	상만주가 	10,000,000	100,000

 선택삭제

 선택수정

 입력

76 총수입금액	10,000,000
77 필요경비	8,000,000
78 소득금액	2,000,000

닫기

적용하기

- 다시 증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칸에 체크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명세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증1건		(단위: 원)	도움말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1	소득자 본인	태***	1	800101-*****
35	본인			1,500,000 원
36	배우자			0 원
37	부양가족	0 명		0 원
38	경로우대자	0 명		0 원
39	장애인	0 명		0 원
40	부녀자			0 원
41	한부모가족			0 원
인적공제 계				1,500,000 원

■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❶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선택	주민등록 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800101-* *****	테***	소득자 본인	여	부	부	부	부	내국인

[선택삭제] **[선택수정]** **[추가입력]** [추가입력]

① 본인	1,500,000 원	
② 배우자	0 원	
③ 부양가족	0 명	0 원
④ 70세 이상인 자	0 명	0 원
⑤ 장애인	0 명	0 원
⑥ 부녀자	0 원	
⑦ 한부모 가족	0 원	
⑧ 인적공제 계	1,500,000 원	

- ❶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3 연금보험료공제 ②	<input type="text" value="0"/>	※ 국민연금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4 개인연금저축공제	<input type="text" value="0"/>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④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②	<input type="button" value="계산"/>	0 원
④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0 원
④7 과세표준		500,000 원
④8 세율		6 %
④9 산출세액		30,000 원

■ 소득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43)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금액은 (44)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이 있는 경우 (45)항목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액공제명세

51 자녀세액공제

51-1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인원	0 명
금액	0 원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51-2 출산·입양 자녀 ?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인원	0 명		
금액	0 원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51-1) 및 (51-2)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01.1.1.이후 가입) 등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52)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합니다.

53)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금액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우리사주조합 금액	0 원

- 기부금이 있는 경우 (53)기부금세액공제 항목의 【기부금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부금명세서

×

❶ 해당연도 기부명세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단위 : 원)

선택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성명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 번호	기부처 상호(성명)	상세보기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선택삭제

선택수정

입력

❷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❸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 : 원)

선택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체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상세보기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선택삭제

선택수정

입력

❹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닫기

등록하기

-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고, 추가로 입력할 사항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0 원
<small>☞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small>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0 원	
(58) 결정세액	
<small>☞ (49) ~ (50)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small>	
(59) 가산세액	
<small>☞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 (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small>	

- 다시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7)번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되고 (54)표준세액공제(7만원) 및 (55)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한도)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 정기신고

① ② 종교인소득신고서 ③

가산세액 계산명세

63 종결정세액 0 원
64 기납부 월천정수세액 100,000 원
65 남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100,000 원
66 (63) - (64)
67 안내
▪ 친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 개인자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해야합니다.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친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 계좌신고

68 본인 명의의 자주입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CMA를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정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선택
계좌번호

69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송금스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조회 자료는 신고면의 ■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 정기신고

① ② ③ 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	-100,00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납부특례세액

차감 종합소득세	0 원
가산 종합소득세	0 원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종합소득세	-100,00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현금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납부(현금)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절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도 스마트워드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판금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워드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사용자 ID	xnts_user111
사용자명	테*****
접수번호	210-2022-2-60000905097
접수일시	2022-04-11 22:26:07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800101-*****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모바일
첨부한서류	0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자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		^
과세연월	2021-0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00,000원
종합소득세 납부(한글) 할세액		-100,000원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100,00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한글) 할세액		0원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원

- ▣ (증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안내) 신고서 접수원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 버튼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한글문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한글이 가능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닫기	신고내역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	-------------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후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홈택스)

1 로그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and **신고/납부**. Below the tabs, a banner for '2021.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is displayed. The main content area shows steps for reporting: ① 출연재산 보고(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결산서류 공시(종교단체 외 공익법인). It also shows the reporting deadline: 제출 2022.5.2. 까지 홈택스로 신고. Below this, there are two buttons: 출연재산 보고 (로그인 > 신고/납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and 결산서류 공시 (로그인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결산서류 > 공시/공개 등록하기). A note at the bottom says that by reporting through HomeTax, users can conveniently use '신고도움자료' and '작성요령 동영상' together.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titled '복지이음' with a list of services like 근로자녀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etc., and a '복지이음 바로가기' link. Below this is a section titled '세금종류별 서비스' with icons and names for various tax services.

- 로그인 후 초기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기본사항 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several tabs: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a search bar. Below the tabs, there's a main title '종합소득세 신고'. Underneath, there are four buttons: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and 신고내역 조회.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categories like '신고서 작성' (Declaration Types), '모두채움 신고서(환급 포함)',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 신고서',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and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서'. The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서'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n the right, there are buttons for '금융소득 조회' and '신고도움서비스'. A vertical sidebar on the far right is titled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서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➊ 기본정보 입력

※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Q, R이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작성 가능하오니 그 외의 경우는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귀속년도	2021	주민등록번호	800101 - ●●●●	조회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주소	도로명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지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전자메일	_____	@	_____	직접입력			
주소지 전화	_____ - _____ - _____	휴대 전화		-선택	-	-	
거주구분	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모두채움 적용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부					

❷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가 조회되면 주소지 전화, 휴대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Q, R 유형)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여”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Q, R 유형)를 수정하거나 신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부’를 선택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부’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01. 기본사항	테*** 님 800101-*****			미리보기																																							
02. 종교인소득신고서 ↓ 03. 신고서제출																																											
<p>●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p> <p>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입력내용 저장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p> <p>● 종교인소득명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th> <th colspan="2">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th> </tr> <tr> <th>NO</th> <th>종교단체명</th> <th>사업자등록번호</th> <th>수입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td> </tr> </tbody> </table> <p>● 종합소득세액의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td> <td>0 원</td> </tr> <tr> <td colspan="2">(32) 필요경비 :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td> <td>0 원</td> </tr> <tr> <td colspan="2">(33) 증합소득금액 : (31) - (32)</td> <td>0 원</td> </tr> <tr> <td colspan="2">(34) 소득공제 : (35) ~ (45) 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td> <td>1,500,000 원</td> </tr> </tbody> </table> <p>> 인적공제대상자 명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인적공제명세 도움말</th> <th colspan="2">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th> </tr> <tr> <th>관계명</th> <th>성명</th> <th>내외국인코드</th> <th>주민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자 본인</td> <td>테***</td> <td>1</td> <td>800101-*****</td> </tr> </tbody> </table>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구 분		금 액	(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0 원	(32) 필요경비 :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33) 증합소득금액 : (31) - (32)		0 원	(34) 소득공제 : (35) ~ (45) 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500,000 원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테***	1	800101-*****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구 분		금 액																																									
(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0 원																																									
(32) 필요경비 :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33) 증합소득금액 : (31) - (32)		0 원																																									
(34) 소득공제 : (35) ~ (45) 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500,000 원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테***	1	800101-*****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 소득명세



- 종교인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 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2건 이상 입력 불가함)

종교인 소득명세 자료 입력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수입금액	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0	(77) 필요경비	0	(78) 소득금액	0
------------	---	-----------	---	-----------	---

[닫기](#) [적용하기](#)

-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IV. 종교인소득 홈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연말정산지급명세 및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 아래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구분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checkbox"/>	주(현)	상만추가	109-86-	50,000,000	1,695,000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 할 경우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칸에 체크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명세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이상 입력 불가함)

종교인소득명세 자료 입력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수입금액	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checkbox"/>	1	상만추가 인문양눈유	109-86-85650	50,000,000	1,695,000

(76) 총수입금액	50,000,000	(77) 필요경비	29,000,000	(78) 소득금액	21,000,000
------------	------------	-----------	------------	-----------	------------

닫기

적용하기



- 다시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종교인소득명세자료의 종교단체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입력 후 【등록하기】 및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E***	1	800101-*****
> 인적공제 금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5) 본인	1,500,000 원	(39) 장애인	0 명 0 원
(36) 배우자	0 원	(40) 부녀자	0 원
(37) 부양가족	0 명 0 원	(41) 한부모가족	0 원
(38) 경로우대자	0 명 0 원	인적공제 계(35~41)	1,500,000 원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계산하기 도움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9,500,000 원			
(48) 세율 15.00 %			
(49) 산출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1,845,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0,000 원			

■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적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해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	데***	소득자 본인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Y"/>	<input type="button" value="N"/>	<input type="button" valu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내국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 우측 상단의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9,500,000 원
(48) 세율	15.00 %
(49) 산출세액 : (47) × (48) - 누진공제액	1,845,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0,000 원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명	0 원
	(51-2) 출산·임양 자녀 ※ 출산·임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text" value="0"/> 명 <input type="text" value="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input type="button" value="기부금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 소득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43)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금액은 (44)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이 있는 경우 (45)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checkbox"/>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10만원 초과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55,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51-1) 및 (51-2)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01.1.1.이후 가입) 등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52)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움말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2) 기부금세액공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부금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55,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 기부금이 있는 경우 (53)기부금세액공제 항목의 【기부금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부금명세서

· 해당연도 기부명세			(단위:원)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대상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날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함

등록하기 **닫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설정하기

- 우측 상단의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코드 및 내역을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0 명 0 원
	(51-2) 출산·임양 자녀 ※ 출산·임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checkbox"/>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55,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 다시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7)번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되고 (54)표준 세액공제(7만원) 및 (55)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한도)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❸ 환급금 계좌신고

-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CMA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금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선택-

계좌번호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➊ 신고서 제출		동영상(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➋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테*** (800101-*****)		
귀속년도	2021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21,000,000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19,500,000	0	
산출세액	1,845,00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60,00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0,000	0	
➌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p>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p> <p>※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블랙 환면으로 간편하게 신고)</p>			
➍ 개인정보 제공동의			
<p>※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워터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p>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➎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➏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Hometax. 국세청홈택스

사용자 ID	xnts_user111	사용자명	테****
접수번호	210-2022-2-600000905126	접수일시	2022-04-11 23:10:05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800101-*****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획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0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자영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 (변경)신고** **닫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60,000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60,000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경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24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 (변경)신고 닫기

-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	---------------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화면을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할급됩니다.
•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받은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분납 등 추가 납부서 포함)**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반영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2-03-12	[] ~	2022-04-11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정보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남부한 경우에는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4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과세연결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21년1월 종합소득... 정기(... 정기신고 테스트... 800101-****... 인터넷(...) 2022-04-... 210-202- 정상(0종) 보기 보기 xnts... N 신고이동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홈택스)

1 로그인

복수소득-종교인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연료 수입 등)이 있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기장의무-간편장부, 신고유형-단순경비율)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and **신고/납부**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tabs, there's a search bar and a menu icon.

2021.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제출대상자: ① 출연재산 보고(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결산서류 공시(종교단체 외 공익법인)

제출: 2022.5.2.까지 홈택스로 신고

출연재산 보고: 로그인>신고/납부>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로그인>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공개 등록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 및 '작성요령 동영상'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 < | >

복지이음: 복지이음 바로가기 →
소득과 복지를 연결하다!
• 근로자녀장려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인건비 간편체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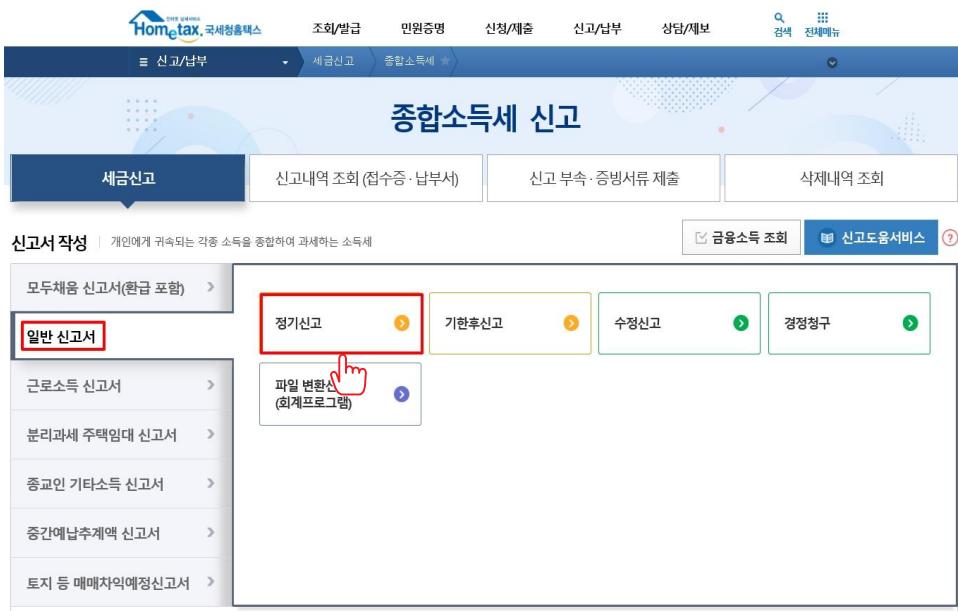
제주 찾는 메뉴: + 등록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권리보호요청 고종민원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장려금신청하기 세무대리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조회 장려금 미리보기 장려금 사전예약

세금종류별 서비스: 1/2 < | >
세금모의계산 법인세
양도소득세 소비제세
원천세 민원증명
사업자등록 공익법인공시
근로자녀장려금 부기기자세

- 로그인 후 초기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기본사항 작성



- 일반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제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제출 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소득세 신고 챗봇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보기 화면도움말

②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종합소득세는 원쪽 메뉴를 순차로 입력하면서 중간 계산을 거쳐 [세액계산]화면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산출됩니다.
※ 일부 값만 수정한 경우에도 이후 화면을 반드시 경유('등록하기' 또는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클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종류 또는 신고유형을 변경할 경우, 「새로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팬업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인 기본사항

* 개인단체 구분 개인 단체(종종) ※ 개인 또는 단체(종종)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 귀속년도 2021 납세자 번호 800101-XXXXXX 조회 성명 데****

주소 도로명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지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휴대전화 010 - I111 - I111 * 주소지 전화

* 사업장 전화

전자 메일 직접입력

④ 신고서 기본사항

신고유형 -선택- * 기장의무 -선택-
 신고구분 정기(확정) 분리과세 여부 여 부
 * 내·외국인 내국인 * 거주구분 거주자 * 거주자국 KR 대한민국 조회
 * 장애인 여부 ○ 여 부 ※ 비장애인인 '예'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종류와 사업장 명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소득)

나의 소득종류 찾기

■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휴대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화면 아래의 소득종류 선택란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체크 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② 사업소득 기본사항

- 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 ※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건 조회됨).
- ※ 940906(보험모집인), 940907(음료배달원), 940908(방문판매원) 업종은 업종코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후 기준경비율 등 다르게 입력이 가능함 (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신고 유형이 다른 2건 이상이 조회됨)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button" value="없음"/>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상호"/>		
업종코드	940909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소득구분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input checked=""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input type="radio"/>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인적용역
기장의무	<input type="button" value="간편장부대상자"/>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유형"/> <input type="button" value="단순경비율"/>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소재지	<input type="button" value="국내"/> <input type="button" value="해외"/>	소재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공동사업자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여" 선택 후 대표자를 입력하세요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강연료 수입과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하고 업종코드는 지금받은 소득의 성격에 맞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각각 선택합니다.

IV. 종교인소득 홈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③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	
□	40			940909	32	

④ 사업소득 기본사항

- 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건 조회됨).
- ※ 940906(보험모집인), 940907(음료배달원), 940908(방문판매원) 업종은 업종코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후 기준경비율 등 다르게 입력이 가능함(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신고 유형이 다른 2건 이상이 조회됨)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조회	상호
업종코드	<input type="text"/>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소득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input type="radio"/>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업태	종목	
기장의무	-선택-	신고유형 <input type="button" value="▼"/>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소재지	국내 <input type="button" value="▼"/>	소재지국 KR <input type="text"/> 대한민국 조회
공동사업자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여” 선택 후 대표자를 입력하세요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⑤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성명		전화번호	<input type="text"/>
대리구분	해당없음 <input type="button" value="▼"/>	관리번호	<input type="text"/> 조회	조정반 번호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작제내역 조회		

테*** 님 | 800101-*****

제출여부 >>>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 소득세 신고 챕터 | 신고도움 서비스 |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 + 사업소득명세서
 -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
 - *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근로/기타/연금소득
- 균형소득 및 결손금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05. 소득공제명세서
-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09. 가산세명세서
- 10. 기납부세액명세서
- 11. 세액계산
- 12. 신고서제출

※ 항간의 선택 후 오른쪽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40	단순경비율	000-00-00001	940909		0	0

화면도움말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합계 (단위: 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합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합계	전체 합계
0	0	0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우측 상단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IV. 종교인소득 흠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Internet Explorer
<https://dev-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v2xPath=/ui/m/a/a/a/UTERNAAC40.xml&popupID=UTERNAAC40&w2xHome=/ui/m/z/&w2xDocumentRoot=>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세분화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 기본사항에서 경제인 선택 여부 : 부

업종코드	<input type="text"/>	코드조회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인적용역사업자)는 4000만원까지 기본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업태					
단순경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율	<input type="radio"/> 초과율			
총수입금액	<input type="text"/>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
등록하기					

*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업종별)

□	NO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1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자영업	5,000,000	3,205,000	1,795,000

수입금액 합계	5,000,000 원	필요경비 합계	3,205,000 원	소득금액 합계	1,795,000 원
---------	-------------	---------	-------------	---------	-------------

닫기 입력완료

-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중앙의 [등록하기] 버튼과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제출여부 >>> 제출작성중입니다.

소득세 신고 계정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보기

화면도움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를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장 정보

※ 한전직 선택 후 오른쪽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	40	단순경비율	000-00-00001	940909	5,000,000	1,795,000

합계 (단위: 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합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합계	전체 합계
0	1,795,000	1,795,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단순경비를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2장

02. 소득금액명세서 ① 사업소득명세서 단순경비를 소득금 액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근로·기타·연금소득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p>④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p> <p>⑤ 사업소득명세서</p> <p>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31, 41)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여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선택 구분</th> <th>소득 사업자 등록번호</th> <th>상호</th> <th>주업종 코드</th> <th>가장 의무</th> <th>신고 유형</th> <th>총수입금액</th> <th>필요경비</th> <th>소득금액</th> <th>공동 사업 부업</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td> <td>40 000-00-000...</td> <td></td> <td>9409...</td> <td>02</td> <td>32</td> <td>5,000,000</td> <td>3,205,000</td> <td>1,795,000</td> <td>부 부</td> </tr> </tbody> </table> <p>⑥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p> <p>※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명세서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변경하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값을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 분</th> <th>주택수(기)</th> <th>수입금액</th> <th>필요경비</th> <th>소득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td> <td></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주택임대소득</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합 계</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p>⑦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p> <p>※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이전 단계에서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td> <td><input type="text"/></td> <td>확인</td> <td>상호</td> </tr> <tr> <td>*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td> <td><input type="text"/> 원</td> <td>*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td> <td><input type="text"/> 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등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colspan="2">[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td> <td>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td> <td>선택내용 삭제</td> <td>선택내용 수정</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NO</td> <td>사업자(주민)등록번호</td> <td>상호(상명)</td> <td>소득세</td> <td>농어촌특별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p>	선택 구분	소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업종 코드	가장 의무	신고 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공동 사업 부업	<input type="checkbox"/>	40 000-00-000...		9409...	02	32	5,000,000	3,205,000	1,795,000	부 부	구 분	주택수(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0	0	0	주택임대소득	0	0	0	0	합 계	0	0	0	0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상호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input type="text"/> 원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선택내용 삭제	선택내용 수정	<input type="checkbox"/>	NO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상명)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선택 구분	소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업종 코드	가장 의무	신고 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공동 사업 부업																																																			
<input type="checkbox"/>	40 000-00-000...		9409...	02	32	5,000,000	3,205,000	1,795,000	부 부																																																			
구 분	주택수(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0	0	0																																																								
주택임대소득	0	0	0	0																																																								
합 계	0	0	0	0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상호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input type="text"/> 원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선택내용 삭제	선택내용 수정																																																								
<input type="checkbox"/>	NO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상명)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강연료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및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메뉴펼침
메뉴접기

테*** 님 | 800101-*****
제출여부 ➤➤➤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도움말
마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금
04.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감가·준비금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①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 공적 연금소득은 5개 사업자등록번호(219-82-01593 국민연금공단, 106-83-03929 국군재정관리단, 220-82-00935 공무원연금공단, 110-82-05569 복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6-82-014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 하나는 필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 소득구분	-전체-	▼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 ③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상호(성명)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도움말																
소득금액(③ - ⑥)																	
월천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월천정수 농어촌특별세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30%;">소득의 지급자</th> <th style="width: 15%;">③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th> <th style="width: 15%;">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th> <th style="width: 15%;">소득금액 (③ - ⑥)</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67</td> <td>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td> <td>상호 (성명)</td> <td>20,000,000</td> <td>16,000,000</td> </tr> <tr> <td></td> <td>109-86-85650</td> <td>상만주가 인문양...</td> <td></td> <td>4,000,000</td> </tr> </tbody> </table>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자	③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③ - ⑥)	<input type="checkbox"/> 67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20,000,000	16,000,000		109-86-85650	상만주가 인문양...		4,000,000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자	③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③ - ⑥)													
<input type="checkbox"/> 67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20,000,000	16,000,000													
	109-86-85650	상만주가 인문양...		4,000,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																	

■ 기타(종교인)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득구분에 [종교인소득67]을 선택한 후 소득 지급자 및 총수입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수록되며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IV. 종교인소득 흠택스(스마트폰) 신고요령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메뉴설정
메뉴접기
제출여부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소득세 신고 챗봇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동영상(결손금 명세서)

❶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본 화면에서부터 마지막[세액계산]화면까지 모든 화면을 차례로 경유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해야 산출세액 등 세액계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 중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와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재계산되므로, 본 화면에서부터 마지막[세액계산]화면까지 차례로 경유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❷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도움말
구분	1. 소득별 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포함) 결손금공제금액	3.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5.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1-2-3-4)
이자소득금액	0				0
배당소득금액	0				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제외)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포함)	1,795,000		0		1,795,000
근로소득금액	0				0
연금소득금액	0				0
기타소득금액	4,000,000	0	0		4,000,000
합계 (종합소득금액)	5,795,000	0	0	0	5,795,000

※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입력하세요.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 이번 사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공제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	---------------	---------

예누클링 | 예누접기 | 테*** 님 | 800101-***** | 제출여부 |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 소득세 신고 뱃봇 | 미리보기 | 동영상(소득공제명세서) | 화면도움말 | 도움말 | 미리보기

① 소득공제명세서 | ② 소득금액명세서 |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④ 소득공제명세서 | ⑤ 기본금 및 조정명세서 | ⑥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⑦ 세액공제·감면 준비금 | ⑧ 가산세명세서 | ⑨ 기납부세액명세서 | ⑩ 세액계산 | ⑪ 신고서제출

▶ 인적공제 등록 | 주민등록번호 | 확인 | 성명 | 내국인 | 내국인 | 기본공제 | ① 해당자 | ② 미해당자 | 관계 | 소득자 본인 | 인적공제항목 | 70세 이상 | 부녀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등록하기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 ※ 2016년기준부터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담해 확인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계크하여 등록하면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확인에서 기본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 선택내용 수정 | 선택내용 삭제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1. 본인 | 1,500,000 | 5. 장애인 | 0명 | 0 | 2. 배우자 | 0 | 6. 부녀자 | 0 | 0 | 3. 부양가족 | 0명 | 7. 한부모가족 | 0 | 0 | 4. 70세 이상인 자 | 0명 | 8. 인적공제 계 | 1,500,000

■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종교인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우측 상단의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후 관계 및 인적공제 항목을 각각 선택 합니다.
-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1. 국민연금보험료 도움말	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계산하기	0
12. 기타연금보험료 도움말	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도움말	0	17. 특별공제 계(16)	0
14. 특별공제_보험료 계산하기	0		
①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도움말	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도움말	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25.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도움말	0
20. 주택마련저축 도움말	0	2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도움말	0		
22. 신용카드 등 도움말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도움말	0	27. 계(18+ ~ +26)	0
②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초과액			
28. 소득공제 합계(8+11+12+13+1 7+27)	1,500,000	2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15+1 9~23+26-2,500만원) 도움말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며 각 항목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테*** 님 | 800101-*****

제출여부 >>> **제재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기부금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하려면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 단계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어도 기부금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으로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선택내용 입력/수정					
공제구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입종코드
<input type="checkbox"/> 세액(소득) 필요경비	800101-*****	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800101-***** 성명 테***

* 유형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기부내용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선택	기부자 성명	기부자 관계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기부처 상호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합계금액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기부금			

[등록하기]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공제받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유형코드,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건수 및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차례대로 각각 입력합니다.
-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	---------------	---------

<input type="checkbox"/> 예누락점 <input type="checkbox"/> 예누락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성명세서 07. 종합소득 신용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면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테*** 님 800101-***** 제출여부 >>> 제출을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 세액감면(면제)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종합소득금액</td> <td style="width: 25%;">5,795,000</td> <td style="width: 25%;">산출세액</td> </tr> <tr> <td>(단위: 원)</td> <td>257,700</td> <td></td> </tr> </table> <p>● 사업장 정보</p> <p>※ 사업장을 1건씩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출설히어 내용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선택내용 입력/수정]</td> <td style="width: 10%;">선택내용 삭제</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15%;">신고유형</th> <th style="width: 15%;">사업자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5%;">상호</th> <th style="width: 15%;">소득금액</th> </tr>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40</td> <td>32</td> <td>000-00-00001</td> <td></td> <td>1,795,000</td> </tr> </table> </td> </tr> </table> <p>● 세액감면(면제) 신청서(0000-00-00001)</p> <p>※ 대상세액란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전의 감면세액을 기재하되 감면세액란에는 해당세액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감면 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선택내용 입력/수정]</td> <td style="width: 10%;">선택내용 삭제</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세액감면율</th> <th style="width: 25%;">대상세액</th> <th style="width: 25%;">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액감면 합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0 0 0 0</td> </tr> </table> <p>•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110, 119-127 을 모두 합하여 1건으로 입력함. • 130, 131 ※ 해당 세액감면은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p> <p>•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 • 116 ※ 해당 세액감면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함</p> <p>•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 • 116 ※ 해당 세액감면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함</p> <p>•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 • 116 ※ 해당 세액감면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함</p> <p>•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 • 116 ※ 해당 세액감면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을 해야함</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button" value="등록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후 다음이동"/> <input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type="button" value="검토 서식"/> </p> </div>	종합소득금액	5,795,000	산출세액	(단위: 원)	257,700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15%;">신고유형</th> <th style="width: 15%;">사업자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5%;">상호</th> <th style="width: 15%;">소득금액</th> </tr>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40</td> <td>32</td> <td>000-00-00001</td> <td></td> <td>1,795,000</td> </tr> </table>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2	000-00-00001		1,795,000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세액감면율</th> <th style="width: 25%;">대상세액</th> <th style="width: 25%;">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0	0	0	(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0	0	0	(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	0	0	0	(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	0	0	0	(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	0	0	0	(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	0	0	0	세액감면 합계		0 0 0 0	
종합소득금액	5,795,000	산출세액																																																																			
(단위: 원)	257,700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15%;">신고유형</th> <th style="width: 15%;">사업자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5%;">상호</th> <th style="width: 15%;">소득금액</th> </tr>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40</td> <td>32</td> <td>000-00-00001</td> <td></td> <td>1,795,000</td> </tr> </table>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2	000-00-00001		1,795,000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2	000-00-00001		1,795,000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세액감면율</th> <th style="width: 25%;">대상세액</th> <th style="width: 25%;">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0	0	0	(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0	0	0	(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	0	0	0	(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	0	0	0	(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	0	0	0	(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	0	0	0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100)증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101)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0	0	0																																																																		
(102)창업증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0	0	0																																																																		
(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105)고용창출증장기업세액감면	0	0	0																																																																		
(106)사업전환증소기업세액감면	0	0	0																																																																		
(108)지방이전증소기업공장세액감면	0	0	0																																																																		
(110)농어촌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	0	0	0																																																																		
세액감면 합계																																																																					
0 0 0 0																																																																					

■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	---------------	---------

매뉴펼침	매뉴접기	제출여부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영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05. 소득공제영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4. 세액공제 신청서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면제)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액공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부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동영상(세액공제 신청서) (단위: 원)
--	--	---

<input type="checkbox"/>	선택내용 입력/수정	<input type="checkbox"/>	선택내용 삭제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련번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1 40 32 000-00-00001 1,795,000						

<input type="checkbox"/>	구분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단위: 원)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0 0 0				
법인전환 승계공제 0 0 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0 0 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0 0 0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0 0 0				

• 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 ※ 해당 세액공제는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 • 투자자산명세서 ※ 해당 세액공제는 투자자산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 해당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input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	---

•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서식 내려받기"/>
---------------	--

□ 공제감면 채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걸로 서식 내려받기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걸로 서식 내려받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걸로 서식 내려받기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걸로 서식 내려받기 	<input type="button" value="검토 서식"/> <input type="button" value="검토 서식"/> <input type="button" value="검토 서식"/> <input type="button" value="검토 서식"/>
---	--

■ 세액공제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한도는 2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2장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메뉴펼침
메뉴접기
태*** 님 | 800101-*****
제출여부 >>> 제제출 작성중입니다.

①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구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조약(일어만교사)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합계			0	

(단위: 원)

②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명세서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0	영	0	
			<input type="checkbox"/> 첫제			

■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도움말	0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도움말	0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도움말	0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		160,000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액공제 합계는 세액공제 항목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와 헬스케어공제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지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② 준비금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선택			
준비금손금산입액 연도		준비금손금산입액 금액			
준비금 환입액 당기환입액		준비금 환입액 환입액 누계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상호			
등록하기 ① ②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준비금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 연도	손금산입 금액	당기환입액	환입액 누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가산세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메뉴펼침
메뉴접기
테*** 님 | 800101-*****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보기

① 가산세명세서				
② 금액				
총합소득금액	5,795,000	상출세액	257,700	
(단위: 원)				
③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수입금액		
000-00-00001		5,000,000		
④ 무신고 가산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무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20/100	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0	7/10,000	0
⑤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계산기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10/100	0
부당감면·공제	공제세액	0	40/100	0

■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이번 사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기납부세액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메뉴펼침 메뉴접기 테*** 님 800101-***** 제출여부 >>> 제재출 작성중입니다. 소득세 신고 첫봇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보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기납부세액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포합징수세액의 근로소득(8)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감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2-가-5.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2-나.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 2-다.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 메뉴의 원천징수소득세·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기납부세액명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소득세</th> <th>농어촌특별세</th> </tr> </thead> <tbody> <tr> <td>중간예납세액</td> <td>0</td> <td></td> </tr> <tr> <td>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td> <td>0</td> <td></td> </tr> <tr> <td>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td> <td>0</td> <td></td> </tr> <tr> <td>수시부과세액</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포합징수세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소득세</th> <th>농어촌특별세</th> </tr> </thead> <tbody> <tr> <td>이자소득</td> <td>0</td> <td></td> </tr> <tr> <td>배당소득</td> <td>0</td> <td></td> </tr> <tr> <td>사업소득</td> <td>0</td> <td>0</td> </tr> <tr> <td>근로소득</td> <td>0</td> <td>0</td> </tr> <tr> <td>연금소득</td> <td>0</td> <td></td> </tr> <tr> <td>기타소득</td> <td>0</td> <td></td> </tr> <tr> <td>합계</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div>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0		수시부과세액	0	0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합계	0	0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0																																									
수시부과세액	0	0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합계	0	0																																								

■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중간예납 세액은 자동으로 표시되며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세액계산

메뉴열침	메뉴접기	태*** 님 800101-*****	제출여부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세액계산 동영상(세액계산) 화면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div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div>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p>※ 금융소득과 부동산 매매업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p> <p>※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p>				
05. 소득공제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06. 기부금 및 조경명세서		종합소득금액	21	5,795,000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소득공제	22	1,500,000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과세표준(21-22)	23	4,295,000	41	0
09. 가산세명세서		세율(%)	24	6.00	42	0.00
10. 기납부세액명세서		산출세액	25	257,700	43	0
11. 세액계산		세액감면	26	0		
12. 신고서제출		세액공제	27	90,000		
		종합과세(23-24-25)	26	167,700	44	0
		결정세액	분리과세소득	0	45	0
			합계(26+27)	167,700	46	0
		가산세	29	0	47	0
		추가기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0	48	0
		합계(28+29+30)	31	167,700	49	0
		기납부세액	32	0	50	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167,700	51	0
		납부특례세액차감	34	0		
		납부특례세액가산	35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36	0	52	0

■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입력된 소득자료 및 공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가산세	29	0	47	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0	48	0
합계(28+29+30)	31	167,700	49	0
기납부세액	32	0	50	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167,700	51	0
납부특별세액차감	34	0		
납부특별세액가산	35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36	0	52	0

②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167,700
농어촌특별세(51-52)	0

※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출알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화면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확인이 끝나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신고서제출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신고서 제출 신고서내용 요약		
	<input type="checkbox"/> 동영상(신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화면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소득자	티*** (800101-*****)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과금	귀속년도	2021	
05. 소득공제명세서	신고유형	정기신고(32,단순경비율)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금액	5,795,000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08. 세액공제,감면 준비금	과세표준	4,295,000	0
09. 가산세명세서	산출세액	257,700	0
10. 기납부세액명세서	납부(환급)할 총 세액	167,700	0
11. 세액계산	납부특례세액차감	0	
12. 신고서제출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167,700	0
한글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 신고서 제출하기 ' 버튼을 눌러주세요. <small>*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small> <small>*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블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small>			
개인정보 제공동의			
<small>*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워낙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small>			
<input checked="" type="radio"/> 예 동의합니다. <input type="radio"/>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order: none; padding: 5px 10px;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 type="button" value="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HOME TAX 국세청홈택스

사용자 ID	xnts_user111	사용자명	E****
접수번호	210-2022-2-600000905130	접수일시	2022-04-12 00:07:28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E****	사업자(주민)등록번호	800101-*****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7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변경)신고** **닫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295,000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납부(현금)할세액	167,700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167,700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경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 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경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24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금장소\(변경\)신고](#)
[닫기](#)

- 내용을 확인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❶ 신고서 제출목록

신고일자	2022-03-15	~	2022-04-12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정보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 정보 공개 대상: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4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과세연결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표 (성명)	사업자(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input type="checkbox"/>	2021년1월	종합소득...	경기(...)	정기신고	테스트...	800101-****-	인터넷(...)	2022-04-...	210-202...	정상(7종)	보기	보기	xnts...	N	신고이동	N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 I 계산구조
- II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방법
- III 신고서 작성사례

I | 계산구조

1.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환산 급여를 산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계산순서(① ⇒ ④ 순서로 진행)

$$\textcircled{1} \quad \text{퇴직소득} - \text{근속연수공제}$$



$$\textcircled{2} \quad \text{환산급여 계산} = \textcircled{1}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textcircled{3} \quad (\textcircled{2}-\text{환산급여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6\sim45\%)$$



$$\textcircled{4} \quad \text{최종 산출세액 계산} = \textcircled{3} \times \text{근속연수} \div 12$$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합계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 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 5천 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세율	과세표준	산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40만원
=산출세액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II

|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방법

1. 모의계산 프로그램 이용

홈택스 누리집(<http://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서비스」 클릭 → 「세금 모의계산」 클릭 → 「퇴직소득 세액」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클릭

2.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이용

- ('20년 이전 귀속)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상단의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21년 이후 귀속)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하단의 「자료실」 →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세무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하여야 함
 -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다운로드

III | 신고서 작성사례

김성실씨는 A교회에 2002.01.01. 입사하여 2021.03.31. 퇴사하였으며,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00,000,000원임.

〈계산내역〉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 퇴직소득공제	12,000,000	
근속연수공제	12,000,000	= 400만원 + 80만원 × (20년 - 10년)
(=) 환산급여	52,800,000	= (100,000,000-12,000,000) ÷ 20년 × 12
(-) 환산급여공제	34,880,000	= 8,000,000 + (52,800,000-8,000,000) × 60%
(=) 퇴직소득과세표준	17,920,000	
(×) 세율	15%	
(=) 환산산출세액	1,608,000	
÷ 12 × 근속연수	÷ 12 × 20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2,680,000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김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520501 - 1*****				
③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						
④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⑯ 수정신고	⑳ 경정청구	⑭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③ 세무대리인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대리 구분	⑬ 신고			
	⑫ 관리번호	-	⑭ 조정번호				
④ 퇴직 소득 명세	⑯ 지급처명	⑯ 입사일	⑯ 지급일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	
	⑯ 사업자등록번호	⑯ 퇴사일	⑯ 근속월수				
	A교회	2002.01.01	2021.03.31				
	320-**-*****	2021.03.31	231				
합 계							
⑤ 균속연수계산	⑯ 제외월수	⑯ 가산월수	⑯ 증복월수	⑮ 정산근속연수	⑯ 2012.12.31. 이전 균속연수	⑯ 2013.1.1.이후 균속연수(⑯-⑯)	
				20	11	9	
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퇴직소득(⑯)		⑯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⑯	12,000,000		
		환산급여 [(⑯-⑯) × 12배/정산근속연수]		⑯	52,800,000		
	세액계산	환산급여별공제		⑯	34,880,000		
퇴직소득과세표준(⑯-⑯)		⑯	17,920,000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⑯ × 세율)		⑯	1,608,000				
산출세액(⑯ × 정산근속연수/12배)		⑯	2,680,000				
차감	세액공제		⑯				
	가산세		⑯				
	기납부 세액		⑯				
	납부(환급)할 총세액(⑯-⑯+⑯-⑯)		⑯	2,680,000			
	분납할 세액(2월내)		⑯				
신고한 내 납부할 세액(⑯-⑯)		⑯	2,680,000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서식 생략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71조 및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영수) 일자인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성실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mm×297mm[백상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제 4 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I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II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I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IV 퇴직소득 원천징수

I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TIP |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요약 및 특례

- 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 ②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도 선택하여 원천징수 가능
- ③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④ 종교단체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은행에 납부
- 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종교인의 소득세액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2.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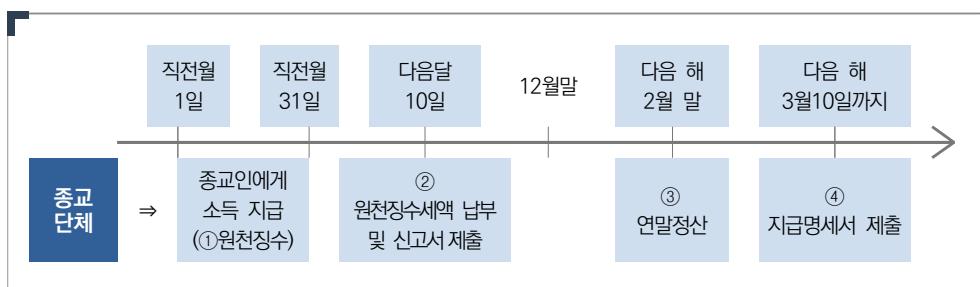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함
- 2) 종교단체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흡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에도 제출

5.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일(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종교단체는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하고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 반기별 납부 제도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반기별(6개월마다)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2) 신고요건 및 기간·방법

○ 신고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를 적용하고자 하는 전월에 신청

신청기간	귀속시기	원천세 신고·납부
'22년 06월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3년 1월 10일까지
'22년 12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23년 7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 받기)

II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매월 또는 반기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2.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
-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22년 2월까지 연말정산 실시

2)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1)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를 들어, '22년 귀속분 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단체는 2022.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홈택스를 통한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종교인소득세액」으로 검색 → 인터넷신청

TIP | 연말정산 포기 시 유의사항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2)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

구분	공제항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종교단체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종교인에게 지급한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 이 경우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봄

5.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연도 3.10.)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임
- 2)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

구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3)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 아님

6. 지급명세서 제출 시 혜택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III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이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사 직원의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종교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1)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에서 조회가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 반기별 납부자도 종교인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합산하여 납부

4)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 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3) 연말정산(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 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

4.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종교단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함. 다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

5.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 1)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흠택스로 제출
- 2)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제출

P A R T

IV | 퇴직소득 원천징수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2)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2.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함

3. 퇴직소득금액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 합계액} - \text{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4.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산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40만원

5.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 1)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2) 다만, 종교단체가 퇴직한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지급시기 의제	종교단체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종교인이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 12월31일까지 미지급
다음 해 2월 말일	종교인이 12월에 퇴직,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6.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7.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교단체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8.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2) 종교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제 5 장

근로·자녀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장려금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2.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

* 소득, 재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급요건	세부내용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 구성</th><th>연간 총소득기준금액</th><th>지급액</th></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¹⁾</td><td>2,200만원</td><td>3~150만원</td></tr> <tr> <td>홀벌이 가구²⁾</td><td>3,200만원</td><td>3~260만원</td></tr> <tr> <td>맞벌이 가구³⁾</td><td>3,800만원</td><td>3~300만원</td></tr> </tbody> </table>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¹⁾	2,200만원	3~150만원	홀벌이 가구 ²⁾	3,200만원	3~260만원	맞벌이 가구 ³⁾	3,800만원	3~300만원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¹⁾	2,200만원	3~150만원													
홀벌이 가구 ²⁾	3,200만원	3~260만원													
맞벌이 가구 ³⁾	3,800만원	3~300만원													
소득요건	1) 홀벌이·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 2)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근로소득(총급여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20%~90%)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3. 자녀장려세제(CTC)

- 1) 소득이 적은 근로자 · 자영업자 가구 등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2)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급요건	세부내용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것		
소득요건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자녀1인당)
	홀벌이 가구	4,000만원	50~70만원
*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종교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21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5월) 신청 가능

'22년 귀속분은 반기(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신청이 가능
(반기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23년 5월 정기신청 가능)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21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5월) 신청 가능

'22년 귀속분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함('23년 5월에 정기신청)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반기신청 가능

2) '21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2.6.1.~11.30.)

3) 신청방법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청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전자신청 : ARS (☎1544-9944), 모바일 앱(손택스), 인터넷 (www.hometax.go.kr) 이용

** 서면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4월말~5월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인터넷)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ARS, 모바일 신청 불가능)

TIP |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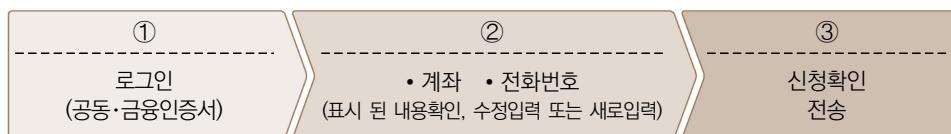
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모바일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계산해보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계산해보기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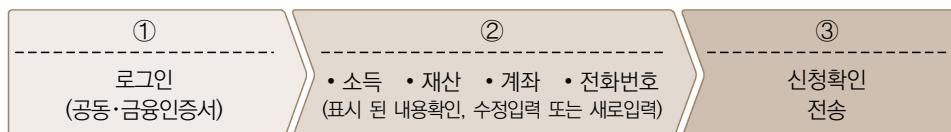
○ 홈택스 신청(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홈택스 신청(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홈택스 신청 공통사항 :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만으로 신청가능

○ ARS 신청(이용시간 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모바일 신청(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모바일 신청(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5) '22년 반기소득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 받으려는 거주자는 '22년 상반기분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1.~9.15, 하반기분 급여에 대해서는 '23.3.1.~3.15.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세부 신청방법은 정기분 신청방법과 동일)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하며,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별 신청) 상반기 신청분(9월)은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분(다음연도 3월)은 6월 지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제외 되거나 지급액이 변경(감액·증액)될 수 있음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소득세 신고 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차감됨

- 장려금 지급액 감액 유형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제한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제 6 장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 사례

1. 과세대상 소득

Question	Answer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Q2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3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들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Q4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Q5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현금 및 시주 등)은 세금이 과세되는지?	현금, 시주 등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Q6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함 ※ 단,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7 사찰의 보시함에 명목을 기재하지 않고 놓고 가는 시주금이나 상담 후 놓고 가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8 개척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9 총회에서 개척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지?	
Q10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

Question	Answer
Q1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종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2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지원금, 이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도 과세대상인지?	
Q13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종교단체의 특정 행사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일회성 수고비 성격의 지급액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일반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 소득(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함
Q14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협동목사를 겸하게 되는데, 신학대 교수인 협동목사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5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특별한 설교나 강의활동 없이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
Q16 기부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연명하는 교회 등의 경우 과세소득이 전혀 없는게 맞는지?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Q17 휴대폰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uestion	Answer
Q18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종교단체가 노트북,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교 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19 목회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성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는지?	
Q20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금액을 종교단체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없는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금 받는 금액은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일부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2. 비과세 소득

Question	Answer
Q21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자녀교육비,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음
Q22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 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p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종교활동비 비과세 요건</p> <p>①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④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⑤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p>
Q23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종교활동비의 정의, 결정, 사용처,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기준을 교회(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뜻임 - 또한, 그러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은 반드시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Q24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①본인학자금, ②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내), ③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종교활동비 포함), ④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 ⑤사택제공이익이 있음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Q25 비과세되는 본인학자금의 한도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한도로 함
Q26 종교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종교인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Q27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비과세 소득인지?	종교인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Q28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식비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경우 얼마까지가 비과세 소득인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임

Question	Answer
Q29 종교인이 사용한 출장비, 여비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소득인지?	<p>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만 비과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정도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절차, 즉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름
Q30 출산·보육비 비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p>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기간 말일 까지는 비과세함 - 자녀의 수와는 상관이 없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든 2명 이상이든 월 10만원만 비과세함)
Q31 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p>종교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교회의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류비 등 지출액은 종교인소득과 무관한 종교단체 회계에 해당함
	<p>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비과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 종교활동에 이용 Ⓒ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Q32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 비용도 비과세 되는지?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임
Q33 종교인 명의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임
Q34 A교회는 담임목사의 원룸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월 70만원,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소속 종교단체 규약에 숙소 임차료를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임

Question	Answer
Q35 종교활동비 인정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Q36 종교활동비 및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그 범위와 근거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함.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법령에 지출한도는 요건 등을 열거하고 있음

3. 종교단체

Question	Answer
Q37 종교인소득 과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종교 단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써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를 말함
Q38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 단체에 해당함
Q39 종단(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9-*****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의 차이가 있는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지출경비 구분 및 관리(단체명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
Q40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소득 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구분기장/장부작성

Question	Answer
Q41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소득 회계를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p>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종교단체 고유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②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장부(통장)와 종교단체 고유의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장부(통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라는 의미임
Q42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 (미이행시 제제 등)?	<p>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장하는 것이 편리함</p>
Q43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와 종교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p>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관리하는데 효율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가운데가 82)을 부여받으면 종교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Q44 미자립교회나 말사 등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p>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종교인회계)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종교단체회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p>
Q45 지출증빙자료를 비치·보관이라고 하는데 사찰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p>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있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 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됨

5. 종합소득세/원천징수

Question	Answer
Q46 종교인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47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써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Q48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종교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Q49 A교회에 갑, 을, 병 3명의 종교인이 있을 경우, 갑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을은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 병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같은 종교단체에서도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각각 달리 선택할 수 있음
Q50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종교단체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51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지?	과세표준 계산과 각종 공제항목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가 동일함

Question	Answer
Q52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을 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53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간 소득 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
Q54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매월 또는 매년 변경할 수 있는지?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 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Q55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당초 원천징수 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Q56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 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종교인소득 예상세액 비교 : 흠택스(PC)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6. 필요경비

Question	Answer
Q57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9.1.1. 지금부터 70% ⇒ 60%로 변경되는데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는지?	<p>변경되는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자상권 등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됨
Q58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방법	<p>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에 따라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p>

7. 공제항목

Question	Answer									
Q59 종교인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Q60 종교인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적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음									
Q61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Q62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통으로 인정</th> <th>근로소득만 추가인정</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공제</td><td>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td><td>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td></tr> <tr> <td>세액 공제</td><td>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td><td>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td></tr> </tbody> </table>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세액 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세액 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표준세액공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 7만원, 근로소득은 연 13만원

*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20~80%)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2~70%)를 적용

8. 해외선교사 관련

Question	Answer
Q63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국내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p>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함.</p> <p>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해당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교사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p>
Q64 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활동비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p>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교활동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득의 성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p>
Q65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규정을 해외선교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동일하게 적용됨
Q66 외국 종교단체가 국내에 설립한 종교단체(분원)의 소속 종교인에게 외국 종교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신고 대상인지?	<p>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된 종교단체의 상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p>

9. 퇴직소득/4대보험

Question	Answer
Q67 종교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과세 대상인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임
Q68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18.1.1.) 이전 적립된 퇴직금을 과세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함
Q69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대상이 되는지?	4대 보험은 해당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아래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발행일자 2022년 4월
발행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소득세과장 한지웅
행정사무관 조민성
국세조사관 양미선
국세조사관 홍준영
국세조사관 최수민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내용은 2022.4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